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5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WTO협정 위배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의 정의 (안 제2조)
-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안 제9조)

## 4. 검토의견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내용이 WTO 협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식재료 등을 정의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용어의 표현, 체제가 일관성이 요구되므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가.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5조 제2항

○ 안 제3조 제1항 및 안 제5조 제2항에서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명칭에 대한 정의가 제7조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음.

#### - 안 제3조 제1항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정 검토안>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제2항

-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수정 검토안>

⇒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나. 안 제3조 제2항

○ 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는바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 검토안>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안 제7조 제1항

○ 안 제7조 제1항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경우 각 자치단체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의 중복이 예상되므로 이를 충청북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수정 검토안>

⇒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붙임 1. 자구 수정안 대비표  
2.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구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b>제3조(지원계획의 수립)</b> ……………</p> <p>① 충청북도지사 ……………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지원방법)</b></p> <p>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p> <p><b>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b></p> <p>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b>제3조(지원계획의 수립)</b> ……………</p> <p>① 충청북도지사 ……………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지원방법)</b></p> <p>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p> <p><b>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b></p> <p>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참고자료]

##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경과

- '04.7.13 : 학교급식조례안 주민청구서 접수(학교급식운동본부)
- '05.4.25 : 제238회 도의회 본회의 수정 의결
- '05.5.13 : 행정자치부 재의요구 지시
- '05.6.22 : 도의회 학교급식조례 원안 재의결

### 《 조례안 주요골자 》

- ▶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급식재료 사용
- ▶ 도지사는 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합계획 수립시행
- ▶ 식재료 구입비 예산범위내 지원 및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 '05.7.5 : 조례안 공포 (의회의장)
- '05.8.1 : 대법원 제소 (행정자치부장관)
  - ⇒ 학교급식지원조례중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 의무규정은 WTO협정의 내국민 대우원칙(GATT 제3조) 위배
- 대법원 제소된 광역자치단체
  - 전북('07.6월), 경남('08.1월), 경기('08. 3.20), 서울('08. 4. 3)
  - ⇒ 개정완료 (행정안전부 대법원 제소 취하)